

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30.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
(2004. 5. 12)에 상정의결

2. 제 안 설 명 요 지 (제안설명 :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 춘 영)

가. 제 안 이 유

-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실비환자에 대한 사용료를 기간별로 구분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환자 입소시 입소보증금 및 월사용료 인상
 - 입소보증금 : 7,000,000원 → 7,800,000원
 - 월 사 용 료 : 600,000원 → 650,000원

- “단기보호” 사용료 인상
 - 단기보호(45일) : 900,000원 → 972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, 실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
- 보건복지부의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입소보증금, 월사용료, 단기보호(45일) 환자에게 이를 맞게 개정하여 수납하고자 한 것으로,
- 검토결과,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(위원 임형규)
 -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환자 입소시 입소보증금 및 월사용료가 개정안대로 인상 되었을 때, 입소자가 반발하거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?
- 답변 (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)
 - 반발이나 문제는 없습니다.

5. 토 론 요 지

- 특이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 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7명.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